

## 경운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“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”에 따라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대학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
2.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·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
5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·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
6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자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·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(본부)장, 주요 재정지원사업단장, 외부전문가, 재학생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총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4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행정지원)**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대학혁신원 미래전략본부에서 담당한다.

**제6조(세부사항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<2022.04.18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